

## 간접비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단”이라 한다) 간접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라 함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과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연구과제(이하 “사업과제”라 한다)의 수행경비를 말하며, 연구비를 포함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사업과제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 지원하는 경비 및 단장이 일정비율로 징수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예산 및 회계)** ① 간접비의 예산 및 회계는 산학단에서 담당하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② 간접비의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은 산학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조(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의 징수비율은 지원기관의 지침에서 허용되는 최대비율을 적용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 2012.12.28., 2013.5.1.)

총 연구비	간접비 징수율
~ 10,000,000원 이하	총연구비(부가세제외)의 10%
10,000,000원 초과 ~	총연구비(부가세제외)의 15%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2.7.1.)

③ 사업비 총액에 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간접비의 징수 시기는 사업비 입금시마다 징수한다.

**제5조(간접비의 사용)** ① 산학단은 간접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개정 2012.7.1)
2. 연구책임자가 소속한 부설연구소 운영비 (개정 2012.7.1)
3. 연구비 중앙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개정 2012.7.1)
4.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1조(적립금의 적립)에 근거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에 의하여 예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5. 산학단에서 임용한 교직원의 인건비
6. 연구진 흥활동비
7. 자산취득비
8. 교육훈련비
9.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10. 산학협력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경비
  11.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12. 산학단의 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교직원보수규정 준용) (개정 2012.8.1.)
  13. 산학단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14.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③ 부설연구소에서 수주한 과제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20%를 당해연구소에 지원하여 연구소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7.1. 개정 2013.10.1.)
- ④ 사업단 또는 센터 등에서 직접 집행하는 간접비는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간접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

**제5조의2(간접비 집행제한) (신설 2012.7.1)**

1.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 집행
2. 교내연구과제 연구비 집행
3.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연구장려금 지급
4. 급여성 보직수당 지급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간접비 사용 용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 집행

**제6조(운영시행세칙)** 이 규정의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원기관의 규정, 산학협력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